

2012. 12. 24 Vol. 51

# 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## 주요 농정 이슈

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
미래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도축장 3차 선정

## 거시경제 동향

201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

## 기획 정보

GMO 국내외 현황 및 표시제 확대 동향

## 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## 연구 지원 정보

2012년 가을배추·무, 콩, 사과, 배 생산량 조사결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 
동향 분석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주요 농정 이슈\_1

## 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

※ 본 자료는 12월 18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# □ 추진경위 및 경과

- 농수산물 수입의 증가,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**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**
  -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부처협의(12.3.26~4.9), 입법예고(5.1~6.11), 재입법 예고(7.2~8.13), 규제심사 완료(9.28), 법제처 심사완료(12.7)

### □ 주요 내용

-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  -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하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
-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**원산지 표시대상**을 현행 쇠고기, 돼지고기, 쌀 등 **12개 품목에서** 양고기(염소 포함), 명태, 고등어, 갈치 등 **16개 품목으로 확대**
  - (현행)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(배달용 포함)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, 광어, 우럭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
  - (추가) 염소고기, 명태, 고등어, 갈치
  - (강화) '배달용 돼지고기', '배추김치 중 고춧가루', '살아있는 수산물'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
  -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족발, 보쌈 등으로 확대

-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('12.4.11, 6개 품목 추가)되고 있으나, 단속인력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하여 단속업무 등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
- \* 전국사무소 수/단속인력: (농관원) 109개소/1,100명, (검역검사본부) 14/170

## 참고. 음식점 원산지표시 현황 및 실적

-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: 12종(농산물 6, 수산물 6)
- 농산물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
  - 수산물: 광어, 우럭, 참돔, 미꾸라지, 낙지, 뱀장어('12.4.11부터 시행)

| 연도  | 시행일   |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07 | 7.1   | 구이용 쇠고기(300㎡이상 음식점)               | 식품위생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08 | 7.8   | 쇠고기, 쌀(100㎡이상)                    | 농산물품질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12.22 | 돼지고기, 닭고기, 배추김치 (100㎡이상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10 | 8.11  | 오리고기·배달용 닭고기<br>쌀·배추김치(100㎡미만 포함) | 농수산물의 원산지<br>표시에 관한 법률<br>(식품위생법,<br>농산물품질관리법의<br>원산지 통합) |
| '12 | 4.11  | 광어, 우럭, 참돔, 미꾸라지, 낙지, 뱀장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대상업소: 627천 개소

| 구 분     | 음식점 종류별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일반음식점   | 휴게음식점  | 위탁급식소 | 집단급식소  | 계       |
| 업소 수(개) | 564,712 | 34,712 | 5,669 | 22,253 | 627,346 |

주: 수산물은 276,967개소임(일반음식점 중 한식당 235,552, 일식당 13,494, 위탁급식소 5,669, 집단급식소 22,252).

※ 본 자료는 1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미래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도축장 3차 선정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 □ 주요 내용

- “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”(‘10.11월)에 따라 **미래 도축산업을 선도**해 나갈 **거점도축장으로 3개 업체를 추가 선정**
  - 이번에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**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터**(충남 논산), **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**(경남 김해), **영남엘피씨**(경남 창녕)
  - 작년 12월에는 도드람엘피씨공사(경기 안성), 팜스토리한냉(충북 청원), 농협목우촌 김제공장(전북 김제),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(경남 김해),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(충북 음성) 등 5개소가 1차로 선정
  - 금년 6월에 2차로 롯데햄(경북 김천), 사조산업(충남 천안),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(경북 고령)을 선정
- 거점도축장은 현재 도축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향후 도축·가공·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
  - ※ 소비자단체, 생산자단체,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으로 구성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, 공모를 통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,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
-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 **도축시설 현대화 자금 및 운영자금 등 정책 사업을 집중 지원**하여 **도축뿐만 아니라 가공·유통까지 함께 하는 통합경영체로 발전**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
  - ※ 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 지원 자금 연간 예산 1,500억 원 활용

## 참고 1. 선정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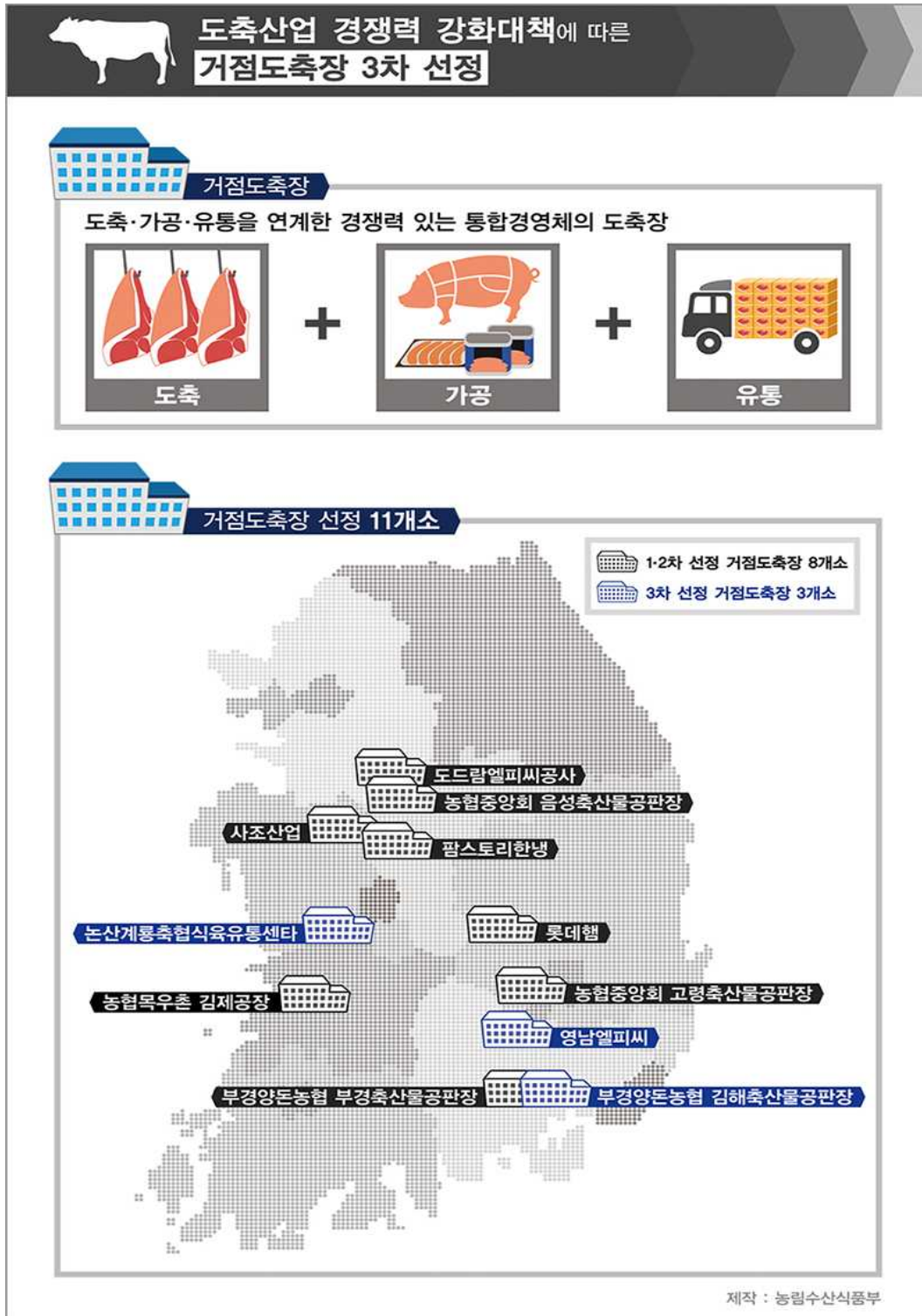
### ○ (일반원칙) 거점도축장 신청자격 제한조건 설정

- 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분담금 미납 업체
-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업체
- 최근 3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  -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(범죄행위)
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업체

### ○ (개별기준) 3개 각 분야별 과락제를 적용, 3개 분야의 전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

- (서류심사) 일반원칙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대상 해당 여부, 경영관리 분야 과락 해당 여부를 심사, 현지실사 대상 선정
    - 신청자격 제한대상 또는 경영관리 과락인 경우 선정 제외
  - (현지실사)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위생수준 및 시설구조 분야를 평가, 점수화하여 과락 해당 여부와 전체 점수 산정
    - ※ 5명이 평가, 최고와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3명 점수의 평균값 적용
  - 거점도축장 선정 시 과락 점수 및 총점 적용
    - (과락제) 위생수준 분야 15점 미만(총 30점), 시설구조 분야 15점 미만(총 30점), 경영관리 분야 24점 미만(총 40점)
    - (총점) 가점을 포함한 전체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
- (개별기준 세부항목) 위생수준과,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, 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계량화

## 참고 2. 인포그래픽스



## 거시경제 동향

## 201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

※ 본 자료는 12월 1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「2012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# □ 수출물가지수

○ 2012년 11월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.6% 하락  
(전년 동월대비 5.5% 하락)

- 농림수산물: 전월대비 4.1% 하락(전년 동월대비 15.2% 하락)

<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>

단위: %

| 구 분   |    | 전월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 동월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수산물 | 하락 | 참치 -7.0, 조개 -6.0, 오징어 -1.8, 김 -0.3 | 참치 -18.0, 조개 -5.5, 오징어 -25.1, 김 -0.6, 배 -11.0 |
|       | 상승 | 배 0.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공산품: 석유화학·고무제품, 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장비제품 및 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2.6% 하락(전년 동월대비 5.4% 하락)

<수출물가지수 등락률>

단위: %

| 구 분             | 가중치    | 전 월 대 비 |       |        |        | 전년 동월대비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| '12.8월  | 9월    | 10월    | 11월    | '12.8월  | 9월     | 10월    | 11월    |
| 총 지 수           | 1000.0 | 0.2     | 0.3   | -1.9   | -2.6   | 1.1     | -1.9   | -5.2   | -5.5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| <1.2>   | <0.6> | <-0.4> | <-0.7> | <-3.1>  | <-2.0> | <-0.6> | <-1.1> |
| 농림수산물           | 5.1    | -0.9    | -5.2  | -3.7   | -4.1   | -0.5    | -11.7  | -15.2  | -15.2  |
| 공 산 품           | 994.9  | 0.2     | 0.3   | -1.9   | -2.6   | 1.1     | -1.9   | -5.1   | -5.4   |
| 석유화학·고무제품       | 193.1  | 3.5     | 1.1   | -2.1   | -3.3   | 1.1     | -1.6   | -3.8   | -4.1   |
| 1차금속제품          | 72.8   | -1.9    | 1.1   | -2.8   | -3.1   | -9.1    | -9.6   | -11.2  | -11.2  |
| 일반기계·장비제품       | 66.6   | -0.5    | 0.3   | -0.8   | -1.9   | 6.0     | 2.6    | -1.3   | -1.3   |
| 전기장비제품          | 53.8   | -1.0    | -0.3  | -1.4   | -2.1   | 0.6     | -1.7   | -3.3   | -3.7   |
| 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장비제품 | 361.5  | -1.5    | -0.6  | -2.2   | -2.2   | 2.0     | -1.4   | -5.8   | -6.6   |
| 운송장비제품          | 144.4  | -0.9    | 0.2   | -1.8   | -1.9   | 3.5     | -0.1   | -5.1   | -4.9   |

주: < >내는 계약통화기준임.

## □ 수입물가지수

○ 2012년 11월 수입물가는 유가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**전월대비 2.8% 하락**(전년 동월대비 7.6% 하락)

- 원자재: 천연고무, 대두 등 농림수산물과 원유, 액화천연가스 등 광산품이 내려 **전월대비 3.2% 하락**(전년 동월대비 9.4% 하락)

※ 농림수산물: **전월대비 1.4% 하락**(전년 동월대비 5.6% 하락)

### <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>

단위: %

| 구 분   |    | 전월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 동월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수산물 | 하락 | 천연고무 -5.9, 대두 -6.5, 냉장어류 -6.8, 돼지고기 -3.7, 밀 -1.5 | 천연고무 -27.1, 원면 -19.8, 옥수수 -4.4, 냉동어류 -21.2, 양모 -11.4 |
|       | 상승 | 쌀 1.6, 우피 1.0, 옥수수 3.0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두 15.9, 우피 14.8, 밀 14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중간재: 석유 및 화학제품, 1차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등이 내려 **전월 대비 2.7% 하락**(전년 동월대비 6.8% 하락)

### <수입물가지수 등락률>

단위: %

| 구 분             | 가중치          | 전월대비  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전년 동월대비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'12.8월 | 9월    | 10월    | 11월                 | '12.8월  | 9월     | 10월    | 11월                 |
| 총 지 수           | 1000.0       | 1.7    | 0.9   | -3.3   | <b>-2.8</b>         | 0.3     | -2.4   | -6.4   | <b>-7.6</b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<2.8>  | <1.4> | <-1.8> | <b>&lt;-0.9&gt;</b> | <-4.2>  | <-2.5> | <-1.9> | <b>&lt;-3.4&gt;</b> |
| 원 자 재           | <b>278.2</b> | 4.6    | 0.9   | -5.1   | <b>-3.2</b>         | 2.9     | -0.2   | -6.0   | <b>-9.4</b>         |
| 농림수산물           | 30.2         | 1.7    | -1.2  | -0.8   | <b>-1.4</b>         | -5.7    | -9.2   | -9.4   | <b>-5.6</b>         |
| 광 산 품           | 248.0        | 4.9    | 1.1   | -5.5   | <b>-3.4</b>         | 3.9     | 0.8    | -5.7   | <b>-9.8</b>         |
| 중 간 재           | <b>556.7</b> | -0.3   | 0.9   | -2.1   | <b>-2.7</b>         | -2.3    | -4.7   | -7.2   | <b>-6.8</b>         |
| 석유제품            | 34.8         | 11.7   | 4.2   | -2.7   | <b>-3.2</b>         | 3.5     | 3.7    | 4.1    | <b>3.5</b>          |
| 화학제품            | 87.4         | 0.4    | 1.1   | -1.1   | <b>-2.1</b>         | -1.7    | -4.8   | -7.5   | <b>-5.4</b>         |
| 비금속광물제품         | 14.0         | -1.7   | 0.7   | -4.8   | <b>-5.0</b>         | -5.0    | -6.9   | -13.8  | <b>-13.8</b>        |
| 1차철강제품          | 59.4         | -2.9   | -1.2  | -3.3   | <b>-3.5</b>         | -7.0    | -10.6  | -13.4  | <b>-13.0</b>        |
| 1차비철금속제품        | 39.3         | -1.6   | 6.2   | -1.6   | <b>-4.1</b>         | -11.9   | -6.4   | -4.1   | <b>-5.8</b>         |
| 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장비제품 | 154.6        | -2.8   | -0.7  | -2.2   | <b>-2.1</b>         | 0.1     | -4.2   | -9.3   | <b>-9.5</b>         |
| 자 본 재           | <b>98.6</b>  | -0.7   | 0.4   | -1.8   | <b>-2.4</b>         | 2.1     | -1.0   | -5.9   | <b>-5.9</b>         |
| 소 비 재           | <b>66.5</b>  | 1.3    | 1.7   | -1.5   | <b>-1.7</b>         | 1.5     | 0.2    | -3.1   | <b>-3.1</b>         |

주: < >내는 계약통화기준임.

※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.

## □ GMO 용어와 개념

### ○ GMO(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)

- ‘유전자재조합생물체(유전자변형생물체)’라고 하며,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특정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든 생물체

### ○ GMO, LMO(Living Modified Organisms), GEO(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), 생명공학, 유전자조작, 유전자재조합, 유전자변형 등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, 사용하는 기관(주체)마다 다르게 용어를 사용함.

<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다양한 용어들>

| 구 분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LMO    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MO법(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)에 따르면 ‘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’를 의미</li> <li>• 그 자체 생물이 생식, 번식이 가능한 것, 즉 살아 있음(Living)을 강조하는 용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MO    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, ‘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’</li> <li>• LMO와 GMO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,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, 냉동, 가공된 식품(ex. 두부, 두유, 통조림 상태의 GM옥수수)과 같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</li> </ul> |
| 유전자변형식품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사료를 각각 유전자변형(GM)식품, 유전자변형(GM)사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용어    | 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제협약 및 국내법…LMO</li> <li>• EU등 많은 유럽국가…GMO</li> <li>• 미국…GEO, 바이오텍 제품(Biotech Products)</li> <li>• 우리나라…“유전자변형생물체”, “유전자변형농산물”, “유전자재조합식품”, “유전자조작식품” 등의 용어 혼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GMO 재배연앙 및 재배면적

- GMO농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**콩, 옥수수, 면화, 유채**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사탕무, 알팔파, 감자, 쌀, 밀, 멜론, 레드치커리, 토마토, 호박, 파파야, 아마 등도 개발되어 있음.

### <2011년 세계 GMO 재배현황 및 비중>

단위: 백만ha

| 작 물     | 전체 재배면적(A) | GMO 재배면적(B) | 비중(B/A)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콩(대두)   | 100        | 75.4        | 75%     |
| 목 화     | 30         | 24.7        | 82%     |
| 옥수수     | 159        | 51          | 32%     |
| 유채(카놀라) | 31         | 8.2         | 26%     |

자료: ISAAA(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), 2011

- 세계적으로 **GMO 재배 비중이 큰 품목**은 **콩, 옥수수**임.

- GMO 재배면적 비중(2011년): 콩 75%(75.4백만 ha), 옥수수 32%(51백만 ha)

### <GMO 연도별 재배면적>

단위: 백만ha

| 구 분   | 1996 | 1997 | 1998 | 1999 | 2000  | 2001  | 2002  | 2003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콩(대두) | 0.5  | 5.1  | 14.5 | 21.6 | 25.8  | 33.3  | 36.5  | 41.4  |
| 옥수수   | 0.3  | 3.2  | 8.3  | 10.1 | 10.3  | 9.8   | 12.4  | 15.5  |
| 총 계   | 0.8  | 8.3  | 22.8 | 31.7 | 36.1  | 43.1  | 48.9  | 56.9  |
| 구 분  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 | 2009  | 2010  | 2011  |
| 콩(대두) | 48.4 | 54.4 | 58.6 | 58.6 | 65.8  | 69.2  | 73.3  | 75.4  |
| 옥수수   | 19.3 | 21.2 | 25.2 | 35.2 | 37.3  | 41.7  | 46.8  | 51    |
| 총 계   | 67.7 | 75.6 | 83.8 | 93.8 | 103.1 | 110.9 | 120.1 | 126.4 |

자료: ISAAA(각 년도)

- 우리나라는 GMO를 상업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**GM작물이 상업화된 1996년 이후 15년 만에 94배 증가**
- 2011년 기준 전 세계 29개국, 1,670만 농민이 GMO 재배, **미국이 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43.1%**인 6천9백만ha를 재배해 **1위를 차지**하며, 그 뒤를 이어 브라질(19%) > 아르헨티나(15%) > 인도(6.6%) > 캐나다(6.5%) 순임.

<주요 국가 작물별 GMO 재배면적 비중(2011년 말 기준)>

단위: 백만ha

| 국 가   | 작 물   | 전체 재배면적(A) | GMO 재배면적(B) | 비중(B/A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미 국   | 옥수수   | 37.4       | 33.9        | 88%     |
|       | 콩(대두) | 30.5       | 29.2        | 94%     |
|       | 목 화   | 5.4        | 4.9         | 90%     |
|       | 사탕무   | 0.5        | 0.5         | 95%     |
|       | 카놀라   | 0.5        | 0.4         | 80%     |
| 브 라 질 | 콩(대두) | 25.0       | 20.6        | 83%     |
|       | 옥수수   | 14.0       | 9.1         | 65%     |
|       | 목 화   | 1.6        | 0.6         | 39%     |
| 아르헨티나 | 콩(대두) | 19.1       | 19.1        | 100%    |
|       | 옥수수   | 4.6        | 3.9         | 85%     |
|       | 목 화   | 0.7        | 0.7         | 98%     |
| 인 도   | 목 화   | 12.1       | 10.6        | 88%     |
| 캐 나 다 | 카놀라   | 8.0        | 7.7         | 96%     |
|       | 옥수수   | 1.4        | 1.3         | 93%     |
|       | 콩(대두) | 1.6        | 1.3         | 81%     |
| 중 국   | 목 화   | 5.5        | 3.9         | 71%     |

자료: ISAAA(2011) 자료를 재가공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(숫자의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한 차이 포함).

- 현재 전 세계 GMO 재배면적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, **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**이므로 **GMO 재배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**
-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, 2009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작물 재배면적 중 GMO가 차지하는 재배면적 비중은 약 50%, GMO 시장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133억 불로 전체 종자시장 가치인 340억 불의 35%에 해당

## □ 국내 GMO 수입 현황

<2011년 국내 GMO 국가별 수입 현황>

단위: 천 톤, 백만 달러

| 국 가      | 총계    |       | 옥수수   |       | 콩(대두) |     | 면실 |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|
|          | 물량    | 금액    | 물량    | 금액    | 물량    | 금액  | 물량 | 금액 |
| 미 국      | 6,343 | 2,103 | 5,997 | 1,931 | 294   | 157 | 52 | 15 |
| 브 라 질    | 395   | 221   |       |       | 395   | 221 |    |    |
| 남아프리카공화국 | 796   | 245   | 796   | 245   |       |     |    |    |
| 기 타      | 318   | 137   | 80    | 27    | 160   | 87  | 78 | 23 |

자료: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(www.biosafety.or.kr)

- 우리나라는 미국, 브라질 등에서 콩과 옥수수 등의 GMO를 꾸준히 수입

하고 있으며, 수입된 GMO(콩, 옥수수)는 우리가 먹고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됨.

- 2011년 국내에 수입된 식용·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2,872건, 약 785만 톤,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수입량은 약 8% 감소하였으나, 총수입액은 약 28% 증가

- 수입 물량의 대부분(약 81%)을 미국에서 수입하고(약 21억 달러) 있으며, 콩 35%, 옥수수 87%, 면실 40% 점유

<국내 식용 옥수수, 대두 수입 중 GMO 수입 현황>

단위: 천 톤, 백만 달러, 건수

| 구 분  | 총계        |     | 옥수수       |     | 콩(대두)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| 물량(건수)    | 금액  | 물량(건수)    | 금액  | 물량(건수)  | 금액  |
| 2008 | 1,553(85) | 733 | 716(38)   | 235 | 837(47) | 498 |
| 2009 | 1,372(50) | 500 | 471(19)   | 82  | 901(31) | 418 |
| 2010 | 1,916(90) | 620 | 993(53)   | 233 | 923(37) | 388 |
| 2011 | 1,875(88) | 808 | 1,025(51) | 343 | 850(37) | 465 |

자료: LMO국가통합정보망, 식품의약품안전청

- 2011년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24%인 약 188만 톤(88건), 작물별로는 옥수수와 콩이 수입 됨.

- 작년 대비 수입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, 작물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총수입액은 작년대비 약 30% 이상 상승

- 2011년 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76%인 약 598만 톤(2,784건)이었으며,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

- 구제역 여파로 작년 대비 9% 감소하였지만, 총 수입액은 작년대비 25% 이상 상승

## □ GMO 표시 및 관리

- 유전자재조합(GM)식품은 안전성 평가심사를 거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, GMO 식품 표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행목적임.
-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(농림수산식품부

고시 제2007-43호)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(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83호)에 법적 근거를 둔.

-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이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함.
  - ※ 과학적 검증: 과학적 검사법을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검사 등을 통해 확인
  - ※ 사회적 검증: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GMO 농산물의 혼입 방지를 위해 종자의 구입·생산·보관·운반·선별·선착 등의 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제출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
- EU가 1998년에 표시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,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1년부터 시행, 미국은 자율표시제를 실시해 다른 국가에 비해 GMO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.

#### <주요국의 GMO 표시관리 비교>

| 구 분                |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U     | 미국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시행 연도              | 2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98   | -         |
| 표시 제도              |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     | 자율        |
| 표시 근거              | 검사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검사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료 사용  | 의무표시제도 없음 |
| 비의도적 혼입치 (농산물에 한함) | < 3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 0.9% | -         |
| 표시 대상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</li> <li>•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GM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</li> <li>• 원료 함량 상위 3순위 이내, 5% 이상</li> </ul> | 모든 식품  | -         |
| 사후관리 방법            |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력추적제  | -         |

주: GM식품 표시제는 각국의 식량 수급 환경, 국민 정서 등에 따라 관리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정보\_www.kfda.go.kr/gmo

## □ GMO 표시제 확대 동향

- 2011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정성 심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된 것은 5개 작물(콩, 옥수수, 면화, 유채, 사탕무) 66품목
- GMO의 연구개발 및 재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됨.
- GMO식품의 위해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,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, 최근

들어 **GMO 표시제\***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.

- 200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GMO 재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국내에서 'GMO 표시제'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
※ 식약청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GM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'GMO'라고 표시하도록 한 제도

-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**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(안)(2008.10.7)**을 입안 예고했지만, 규제규격위원회에서 **식품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사후관리가 어렵다**는 이유로 **4년제 심사 보류**하고 있음.

| ▲ 현재 GMO 표시 대상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▲ GMO 표시 확대 대상 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<br>(ex. 두부, 고추장, 된장, 전분, 과자, 빵 등) |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<br>(ex. 식용유, 간장, 전분당, 설탕, 소주 등) |

- 표시제 확대로 야기되는 **불안감 조성, 식품물가 인상 초래,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(식품업계) ↔ 소비자의 선택권, 식품안전성 보장 등으로 찬성하는 입장(시민단체, 소비자)**으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.

- GMO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오래된 것이지만 지난해부터 10여개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이 상정되는 등 관심대상으로 부각됨.

- GMO 표시제에 대해 **소비자그룹과 일부 유기농 식품 회사는 찬성**하는 반면, **켈로그, 크래프트와 같은 대형 식품회사나 바이오농식품 회사인 몬산토 등은 반대** 입장

## ※ 참고문헌

-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(GMO)정보\_www.kfda.go.kr/gmo
-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\_www.biosafety.or.kr
- 식품의약품안전청 「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이해」 (2012)
- 농협경제연구소\_NHERI 주간 브리프 「GMO 표시제 확대 관련 쟁점과 시사점」 (2012.10.29)
- 농협경제연구소\_NHERI 주간 브리프 「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주요국 GMO 표시제도」 (2011.10.4)
- 식품음료전문 보도자료(2011.9.10) 「'GMO 표시제 확대' 현격한 입장 대립...결론 못내」
- Nocut news 보도자료(2012.6.15) 「미국땅 보다 넓은 GMO 재배면적...알아야 선택할 것 아닌가」

- 이데일리 보도자료(2012.5.31) 「“준비 안된 GMO 표시제 물가만 끌어올린다”」
- 연합뉴스 보도자료(2012.5.26) 「美, GMO 표시제 논란 가열」
- 한국경제 보도자료(2011.2.23) 「GMO, 재배면적 미국보다 넓다」

## 참고자료 1.

<세계 GM농산물 재배면적(2011년 말 기준)>

| 국 가      | 면적(백만ha)      | 재배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 국      | 69.0%(43.1%)* | 옥수수, 콩, 목화, 사탕무, 카놀라, 알팔파, 호박, 파파야 |
| 브 라 질    | 30.3(19%)     | 콩, 옥수수,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르헨티나    | 23.7(15%)     | 콩, 옥수수,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 도      | 10.6(6.6%)    |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캐 나 다    | 10.4(6.6%)    | 카놀라, 옥수수, 콩, 사탕무                   |
| 중 국      | 3.9(2.4%)     | 목화, 파파야, 포플러, 토마토, 피망              |
| 파 라 과 이  | 2.8(1.8%)     |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파 키 스 탄  | 2.6(1.6%)     |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남아프리카공화국 | 2.3(1.4%)     | 옥수수, 콩,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 루 과 이  | 1.3(0.8%)     | 콩,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볼 리 비 아  | 0.9(0.6%)     |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 주      | 0.7(0.4%)     | 목화, 카놀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 리 핀    | 0.6(0.4%)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 얀 마    | 0.3(0.2%)     |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르키나파소   | 0.3(0.2%)     |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멕 시 코    | 0.2(0.1%)     | 목화,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 페 인    | 0.1(0.1%)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콜롬비아     | <0.1          | 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칠 레 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, 콩, 카놀라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온두라스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포르투갈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체 코 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폴란드 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집트 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슬로바키아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루마니아     | <0.1          |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웨덴      | <0.1          | 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코스타리카    | <0.1          | 목화,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독 일      | <0.1          | 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: \* 전 세계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중 해당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 
 자료: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\_www.biosafty.or.kr

## 참고자료 2.

### <주요 국가 GMO 표시제 실시동향>

| 국가        | 시행년도      | 표시대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시대상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의도적 혼입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한국        | 2001. 3   | (의무 표시)<br>•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<br>• 원료 함량 5순위 이내<br>(자율 표시)<br>• 구분 관리된 Non-GM 원료를 사용한 경우, Non-GM 표시 가능 (0%만 인정)                 | • 원료농산물: 콩, 옥수수, 면화, 유채, 사탕무와 이들의 새싹채소<br>• 가공식품: 상기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<br>※ 단, 식용유, 간장, 전분당, 주류, 식품첨가물은 표시제외 | 3%       |
| 일본        | 2001. 4.  | (의무 표시)<br>•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<br>• 원료 함량비 5%이하 이면서, 함량 3순위 이내<br>(자율 표시)<br>• 구분 관리된 Non-GM 원료를 사용한 경우, Non-GM 표시 가능 (5% 이하 인정) | • 대두, 옥수수, 면실, 감자, 유채, 두부, 튀김두부, 된장, 두유, 삶은 콩, 콩통조림 등<br>• 고올레인산대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대만        | 2003. 1.  | (의무 표시)<br>• 재조합 DNA가 잔류여부와 관계 없음<br>• 구분 관리된 Non-GM 원료를 사용한 경우, Non-GM 표시(5% 이하 인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콩, 옥수수 및 이들의 모든 가공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태국        | 2002. 5.  | • 중량비로 5%이상이며, 상위 3위 이내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콩, 옥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호주 · 뉴질랜드 | 2001. 12. | • 재조합 DNA가 잔류하는 경우<br>• 종래의 것과 조성, 영양가 등이 다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모든 식품<br>•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대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%       |
| 브라질       | 2001. 7.  | •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성분이 1%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콩 및 그 가공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%       |
| EU        | 1997. 5.  | • 재조합 DNA 잔류여부와 관계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모든 GM 식품 및 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9%     |
| 중국        | 2003. 3.  | • 재조합 DNA 잔류여부와 관계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농산물: 대두, 옥수수, 유채, 유채박, 토마토<br>• 가공식품: 콩가루, 대두유, 옥수수유, 유채유, 토마토소스, 옥수수가루<br>• 종자: 대두, 옥수수, 유채, 토마토, 면화            | 0%       |
| 미국        | 2001. 1.  | • 종래의 것과 달리 알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<br>• 종래의 것과 조성, 영양가 등이 다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대두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

주: CODEX(국제식품규격위원회),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(7단계) 및 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진행 중(3단계)  
 자료: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\_www.biosafety.or.kr

## 농정 여론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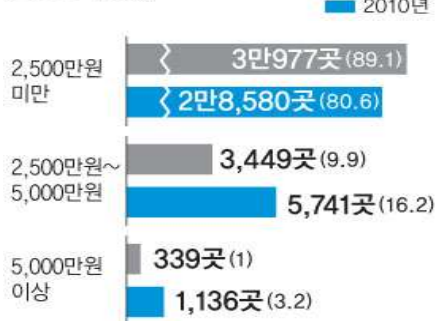
##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※ 본 자료는 12월 17일~2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·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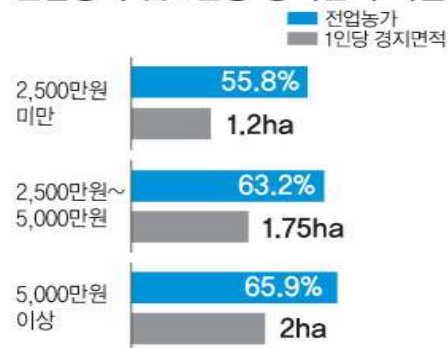
### □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농촌마을 '3%'

- 통계청, 12.13일, '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'에 따르면 **농가 경영주가 젊을수록, 채소나 축산 전업농가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**으로 조사.

평균 판매금액별 농촌마을 현황  
( )안은 비중(%)



전업농가 및 1인당 경지면적 비율



2010년 기준 전국 농촌마을 3만5,457곳 가운데 농가당 ▲**농산물 평균 판매액**...5,000만 원을 넘은 마을 1,136곳(3.2%), 2,500만 원이 안 되는 마을 2만8,580곳(80.6%), 2,500만~5,000만 원 미만 마을 5,741곳(16.2%). ▲**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**...5,000만 원 이상인 마을은 59.9세로 전체 평균(63.2세)보다 3.3세 젊음. 55~60세의 비중이 평균보다 23.1%포인트 높았지만 65세 이상 비중은 28.4%포인트 낮음. 이에 반해 2,000만 원 미만 마을은 평균 연령이 63.5세, 2,500만~5,000만 원 미만은 61.9세. ▲**경영형태**... 5,000만 원 이상인 마을은 논벼(36%) > 채소(33.3%) > 축산(14.8%) > 과수(9.2%) 순. 전체 평균과 비교해 판매금액이 높은 마을은 채소(17%포인트)와 축산(11%포인트)의 비중이 높음. ▲**전업비율**... 5,000만 원 이상 마을이 전체 평균보다 8.5%포인트 높은 65.9%. 5,000만 원 이상인 마을의 1인당 경지면적은 2ha로 평균인 1.32ha보다 넓었고, 홈페이지 운영도 9.6%로 평균 7.3%보다 높음. 논벼는 전체 평균보다 26.3%포인트나 낮음.

자료 : 농민신문(2012.12.17)

## □ **정식 늦어진 데다 추운 날씨...과채류 출하물량 감소**

-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태풍 피해의 여파로 **과채류 출하물량이 예년보다 감소**. ▲**딸기**...재배면적 감소와 생육 지연으로 **2kg 상품 2만9,000~3만 6,000원대 기록**하며 ('11년) 2만1,000~2만6,000원대보다 '**강세**', ▲**풋고추**... **정식이 지연**돼 출하물량이 늦게 나오고 타작목으로의 전환 또는 폐작한 농가가 많아 **재배 감소**, ▲**토마토**...신규 재배 농가 증가 및 축성재배로 전환한 농가 증가해 12월 **출하면적은 늘어났지만 생육 부진**으로 **출하량 주춤**, ▲**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**...과채류의 겨울 작기 정식기인 9월 **태풍 피해로 정식이 지연되면서 출하시기도 작년보다 늦어졌는데** 올해는 이른 추위로 **생육까지 부진**해 전반적으로 **과채류 출하물량이 줄어**드는데다 **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면서 소비까지 좋아 시세가 점차 상승**세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12.20)

## □ **공공비축미 생산량 감소 · 품질 하락 '몸살'**

- 농식품부, **12.14일 기준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**은 목표수량 37만 톤 가운데 **34만 6,000톤으로 93.6%** 유지, 대부분 지역에서 매입을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. 올해 유난히 **잦은 태풍으로 인해 특등비율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**, **하위등급인 2등급과 3등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**할 것으로 예상. 실제 올해 큰 태풍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은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5% 감소한데 이어 품질마저 크게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. 전남도(12.17일)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이 목표대비 80%를 넘어서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품질등급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. 특히 올해 **특등비율**은 12.5%에 불과한데, 전년대비(33.9%) 무려 **21.4% 포인트↓**. 반면에 하위 등급인 **2등급과 3등급**은 16%와 5.6%로 전년대비 (1.5%와 0.03%) **10배~180배↑**. **1등급 비율**은 ('12년) **65.9%로** ('11년) **64.6%와 비슷**. 이 같은 **품질저하는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**. 현재 정부에선 우선지급금으로 특등 (5만610원), 1등급 (4만9,000원), 2등급 (4만6,820원), 3등급 (4만1,670원) 책정, 등급별 가격차이가 큼. 최종 매입가격은 전국 산지쌀값을 조사한 후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, 현재 가격이라면 1등급이 6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등급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12.20)

## □ 축산차량 GPS 의무와 ‘농가 불만’

-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\*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**축산농가 차량에 대한 GPS 장착과 관련 축산농가 불만**. 가축 신고 가축시장 등 가려면 불가피하지만 **부담 가중으로 등록 실적은 미미**. 현행법 상 가축이나 퇴비 등을 운반하지 않는 농가 차량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, **1년에 1번이라도 가축을 신고 가축시장에 가는 경우에는 GPS 등록대상**,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

※ 가축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(GPS)를 장착토록 하는 것. 등록대상은 크게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(축산농가)로 나뉘는데, 축산농장 소유차량(화물차)의 경우 ‘그 밖의 등록차량’에 해당돼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함. 다만 농장에서만 운행하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12.20)

## □ 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, 제대로 ‘가동 안 된다’

- 축산물품질평가원, 12.17일,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 개최, 돼지이력제도\*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제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**도축단계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시급**하다는 지적 제기. 이런 가운데 최소 12자리를 표시해야 할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가 **전국 2개 도축장에서 시범 적용 중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방치**되고 있어 개선 필요. 돼지이력제가 내년 연말쯤 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육단계를 비롯해 도축·가공·판매단계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급선무. 하지만 전산시스템을 포함한 돼지 이력제 추진에 있어 도축단계에서 이력번호 신청과 부여,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 등에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등 비용문제가 적잖게 발생.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팜스토리한냉과 김해 축산물공판장에 시범 적용된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.

※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를 관리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돼지의 사육 농장, 도축장, 도축일자, 위생검사결과, 가공장, 브랜드, 등급 등 이력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

자료 : 농수축산신문(2012.12.20)

## □ 내년부터, 농지은행 지원기준 완화

- 농식품부,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해 고령 농업인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'13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을 만 60세 → 만 64세로 완화하고,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연령도 만 70세 → 만 75세로 확대. 개정된 연령기준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의 농지규모화사업과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(1577-7770)와 지역별 지사에 문의. 지원대상자의 연령기준 완화로 사업지원에서 제외됐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증가 기대

자료 : 한국농어민신문(2012.12.20)

## □ 산림 공익가치 109조 원

- 국립산림과학원, 12.12일,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\*가 2010년 기준 109조67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.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.9배, 임업총생산액의 19.7배, 당시 산림청 예산 1조6,000여억 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.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 원보다 49%가 증가. GDP(국내총생산)의 9.3%에 달하고 국민 한사람 당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.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,000억 원(20%). 이어 수원함양 기능 20조2,000억 원(19%) > 산림조망권 가치 15조2,000억 원(14%) > 산림휴양기능 14조6,000억 원(13%) 순이며, 토사붕괴방지 기능(6조7,000억 원), 산림정수 기능 (6조5,000억 원), 산림생물다양성보전기능(5조3,000억 원)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

※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, 여행비용총지출법,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출.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방법으로 수원함양, 토사유출 방지, 대기정화, 산림휴양, 산림경관, 산림치유, 산림생물 다양성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

자료 : 농수축산신문(2012.12.18)

## 연구 지원 정보

## '12년 가을배추·무, 콩, 사과, 배 생산량 조사결과

※ 본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가을배추·무, 콩, 사과, 배 생산량 조사결과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### □ 가을배추·무

-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1,298천 톤으로 전년(1,897천 톤)보다 31.6% 감소, 평년대비 4.9% 감소
  - 지난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감소(전년대비 ▽22.6%)하였고, 잦은 강우로 인한 초기 생육부진으로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이 감소(전년대비 ▽11.6%)하여 가을배추 생산량 감소
- 가을무 생산량은 500천 톤으로 전년(717천 톤)보다 30.3% 감소, 평년대비 3.1% 증가
- 가을배추의 지역별 생산량은 전남(310천 톤) > 경기(180천 톤) > 충남(173천 톤), 가을무는 전북(119천 톤) > 전남(96천 톤) > 경기(88천 톤) 순으로 나타남.

#### <가을배추·무 생산량>

| 구 분   | 재배면적(천ha) |      |       | 10a당 생산량(kg) |       |       | 생산량(천 톤)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| '11       | '12  | 증감률   | '11          | '12   | 증감률   | '11      | '12   | 증감률   |
| 가을배추  | 17.3      | 13.4 | -22.6 | 10,948       | 9,681 | -11.6 | 1,897    | 1,298 | -31.6 |
| 가을무   | 9.7       | 6.8  | -30.0 | 7,354        | 7,324 | -0.4  | 717      | 500   | -30.3 |
| 일 반 무 | 8.3       | 5.9  | -29.1 | 7,831        | 7,640 | -2.4  | 653      | 452   | -30.8 |
| 총 각 무 | 1.4       | 0.9  | -35.3 | 4,527        | 5,274 | 16.5  | 64       | 48    | -24.6 |

### □ 콩

- 금년 콩 생산량은 123천 톤으로 전년(129천 톤)보다 5.3% 감소
  - 건강식단 선호와 최근 콩 가격의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(전년대비 △3.8%)하였으나, 생장기인 8월 하순~9월 태풍의 영향으로 꼬투리 결실 및 잎의 생육이 불량하여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 감소(전년대비 ▽8.4%)
- 지역별 생산량은 경북(29천 톤) > 충북(20천 톤) > 전남(16천 톤)순

### <콩 생산량>

| 재배면적(천ha) |      |     | 10a당 생산량(kg) |     |      | 생산량(천 톤) |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|
| '11       | '12  | 증감률 | '11          | '12 | 증감률  | '11      | '12   | 증감률  |
| 77.8      | 80.8 | 3.8 | 166          | 152 | -8.4 | 129.4    | 122.5 | -5.3 |

## □ 사과, 배

### ○ 사과 생산량은 395천 톤으로 전년(380천 톤)보다 4.0% 증가

- 성목 재배면적 증가(전년대비 △1.1%), 사과의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 증가(전년대비 △2.8%)에 기인

### ○ 배 생산량은 173천 톤으로 전년(291천 톤)보다 40.6% 감소

- 타 과수재배로의 전환 증가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.5% 감소하였고, 8월 말~9월 불라벤 등 태풍으로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이 전년보다 38.4% 감소하여 배 생산량 감소

### ○ 사과 생산지는 경북(252천 톤) > 충북(54천 톤) > 경남(40천 톤), 배 생산지는 경기(46천 톤) > 충남(31천 톤) > 경북(30천 톤) 순으로 나타남.

### <사과, 배 생산량>

| 구 분    | 재배면적(천ha) |      |      | 10a당 생산량(kg) |       |       | 생산량(천 톤)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'11       | '12  | 증감률  | '11          | '12   | 증감률   | '11      | '12     | 증감률     |
| 사과     | 21.4      | 21.6 | 1.1  | 1,774        | 1,824 | 2.8   | 379.5    | 394.6   | 4.0     |
| 미과수 포함 | 31.2      | 30.7 | -1.4 | 1,218        | 1,284 | 5.4   | (379.5)  | (394.6) | (4.0)   |
| 배      | 13.8      | 13.3 | -3.5 | 2,100        | 1,293 | -38.4 | 290.5    | 172.6   | -40.6   |
| 미과수 포함 | 15.1      | 14.4 | -4.8 | 1,926        | 1,203 | -37.5 | (290.5)  | (172.6) | (-40.6) |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